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319

발의연월일 : 2021. 8. 30.

발 의 자:정청래·김남국·김영배

김주영 · 송갑석 · 양원영

오영환・유정주・윤재갑

이병훈 · 임오경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직·간접, 대면·비대면, 온라인·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 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.

현행법상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,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,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제2호 중 "피해학생"을 "대면·비대면, 인터넷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피해학생"으로 하고, "협박 및 보복행위의"를 "협박, 상해, 폭행, 감금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 등보복행위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피해학생</u> 및 신고·고발 학	2. <u>대면·비대면, 인터넷·휴대</u>
생에 대한 접촉, <u>협박 및 보</u>	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등을
<u> 복행위의</u> 금지	이용해 피해학생
	협박, 상
	해, 폭행, 감금, 약취ㆍ유인,
	명예훼손 • 모욕, 공갈 등 보
	<u> 복행위의</u>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②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